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7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 : 2018년 10월 29일
- 라. 상정일 :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7일 상정·의결(심사보류)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 가. 제안이유

-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기반의 시정 참여가 축소되는 현실에 맞추어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의 사용용도 정비(안 제8조제1항)

(1)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

(2)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를 “그 밖에 공공 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에서 “온라인 도서 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대

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표현 등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2018. 8. 2. ~ 8. 22.)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명시한 사용 규정(안제8조 제1항)을 변경하고,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부여 기준을 삭제(안 제8조 제3항 및 별표)하려는 것임.

※ ‘마일리지(Mileage) 제도’ 또는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보너스점수를 주고, 누적된 점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Loyalty: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가진 상태)를 제고하는 유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IT 기술발달에 따라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본 조례는 200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인터넷 기반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까지 제도의 효과성검증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본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회원기반의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및 적립금액이 축소되고, 단순 로그인, 일회성 가입 등 일부 적립서비스의 경우 시정참여와 시정홍보 등의 효과가 미흡한 바, 마일리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보유현황

- 전체회원 대비 1천 미만(97.2%), 1천이상~5천 미만(2.4%), 5천 이상~1만 미만(0.3%), 1만 이상(0.1%) 순

점 수	1만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	1천 이상 5천 미만	1천 미만	합 계
회원수(명)	655	1,316	11,073	448,140	461,184
비 율	0.1%	0.3%	2.4%	97.2%	100%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u>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u>	2. <u>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u>
3. <u>도서문화상품권 지급</u>	<u>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u>
4. <u>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u>	<삭 제>
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삭 제>

○ 본 개정조례안은 SNS채널의 다양화 등 인터넷 사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홈페이지상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59개 기관중 5곳이 운영중에 있음.

구분	합계	마일리지 운영	마일리지미운영	비고
총계	59	5	54	
중앙 기관	18	-	18	
광역 시도	16	3	13	
		인천시		예산 : 150만원(T-머니, 기부 사용)
		부산시		예산 : 300만원(상품권, 문자, 기부 사용)
		강원도		예산 : 없음(자체 문자서비스 활용)
자치구	25	2	23	
		광진구		예산 : 없음(자체 문자서비스 활용)
		마포구		예산 : 없음(자체 문자서비스 활용)

○ 다만, 현재 휴대전자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가 사용(2017년 기준 1,318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삭제가 적정한지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사용현황

- 총 11,130건으로 기부(4,756건), T머니 충전(2,860건), 도서문화상품권 (2,136건), 문자전송(1,318건), 전통시장 상품권(60건) 순

연번	종류		사용점수	사용방법	2017년 사용		
					건수	금액(천원)	비율
1	도서문화상품권	온라인	5천점 이상	온라인 상품권 충전	2,136	14,670	0.44%
		종이	2만점 이상	등기발송			
2	전통시장상품권		2만점 이상	등기발송	60	1,200	0.01%
3	T-머니		1천점 이상	T-머니 충전	2,860	6,257	0.59%
4	문자전송		1건당 20점	마일리지 차감	1,318	32	0.27%
5	기부		100점 이상	기부금액 적립	4,756	4,859	0.98%
합계					11,130	27,018	2..29%

**다. 마일리지 사용 용도 제한 변경(안 제8조 제3항 및 별표)**

- 안 제8조제3항은 회원가입, 로그인,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등으로 세분화된 마일리지 대상, 부여점수, 부여방법이 포함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규정한 조례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 하는 것임.
- 개정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삭제·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여기준을 조례로 규범화한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일리지 운영의 행정편의성만을 위해서 규범화된 별표를 삭제 함에 따라, 당초 마일리지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별표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함께 집행부의 자의적 운영의 적정성과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의 요소는 없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조례로 정한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	-------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② (생략)

③ 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 인	홈페이지 방문 자	10점	1일 1회
3. 글·사 진 및 동 영상 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 은 직접 시정참 여와 관련된 것 으로서 시장이 인정 하는 것)	100점 이상 3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 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 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 여 점수를 부여 한다

주: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  
준, -----  
-----.

별표를 삭제 한다.

<삭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존치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규정을 존치함(안 제8조 제3항).
- 마일리지 부여기준에서 유형, 대상, 부여점수 및 방법을 조정함(별표).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97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존치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규정을 존치함(안 제8조 제3항).
- 마일리지 부여기준에서 유형, 대상, 부여점수 및 방법을 조정함(별표).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안 제8조제3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설문 문항수 6~10문항 참여	300점	전당 1인 1회
	설문 문항수 11~20문항 참여	400점	
	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	500점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마일리지 제도 의 운영) ① (생략)</p> <p>1. (생략)</p> <p>2. 휴대 전화 문자메 시지 전송서비스</p> <p>3. <u>도서문화상품권 지급</u></p> <p>4. <u>그 밖에 공공서비 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u></p> <p>② (생략)</p> <p>③ <u>마일리지는 별표 에 따르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 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u></p> <p>[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p>	<p>제8조(마일리지 제도 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온라인 도서문화 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준, 사용방법</u> ----- ----- ----- ----- -----.</p> <p>&lt;삭제&gt;</p>	<p>제8조(마일리지 제도 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온라인 도서문화상 품권으로의 교환</u></p> <p>3. <u>그 밖에 공공서비 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u></p> <p>&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p>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 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게시물은 직접 시정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	100점 이상 3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 장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설문 문항수 6~10 문항 참여	300점	건당 1인 1회
	설문 문항수 11~20 문항 참여	400점	
	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	500점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 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을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정 참여유도”를 “시정 참여유도”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그밖에”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설문 문항수 6~10문항 참여	300점	전당 1인 1회
	설문 문항수 11~20문항 참여	400점	
	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	500점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p> <p>4.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말한다.</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그밖에</u>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p> <p>② · ③ (생략)</p>	<p>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u>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 -----, <u>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p>	<p>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 -----</p>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 ~ 8. (생략)
- 9.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6조(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  
-----  
-----  
-----

- 1.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에-----  
-----

제6조(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  
 -----시정 참여유도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생략)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  
-----  
-----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게시물은 직접 지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 하는 것)	100점 이상 3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설문 문항수 6~10문항 참여	300점	전당 1인 1회
	설문 문항수 11~20문항 참여	400점	
	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	500점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